

# ‘서울특별시 · (주)더존비즈온’ 전자납부 활성화 사업 공동협력 협약서

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)와 (주)더존비즈온(이하 ‘더존’ 이라 한다)은 ‘서울시’의 지방세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납세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‘서울시’와 ‘더존’이 서울시 지방세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‘더존’의 축적된 정보화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 및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협력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)

본 협약의 당사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역할을 담당한다.

1. ‘서울시’는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활성화 등 납세 편의 서비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협력한다.
2. ‘더존’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서울시 세무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방세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활성화 등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.

## 제3조(공익추구·비정치·비영리의 목적)

본 협약의 당사자는 공익추구의 원칙을 가급적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사업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, 종교 또는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배제한다.

## 제4조(세부시행)

이 협약의 추진을 위해 협약의 당사자는 제2조 각호의 분야별 세부 추진사업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.